

이천시민간인실비보상에관한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1998. 12.

제출자 : 이천시장

□ 제안이유

주민자치시대에 행정에 참여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실비보상을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없이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므로써 재정운영의 한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.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전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가. 보상금은 행정사무의 수행, 공익목적의 달성을 또는 시체의 추진에 기여한 주민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함(안 제2조).
- 나.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를 환경오염행위등 각종 불법행위 신고자, 민원업무지원등 각종 자원봉사자, 기타 사정에 협조한 정도가 현저한 자등으로 정함(안 제3조).
- 다. 보상금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).
- 라. 보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을 이천시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(안 제5조).

이천시민간인실비보상에관한조례(안)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실비보상의 원칙) ①시장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.

②보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사무의 수행, 풍익목적의 달성을 또는 시책의 추진에 기여한 주민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

제3조 (지급대상자)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의 신고자

- 가. 환경오염행위
- 나. 불법선거운동행위
- 다. 공중 및 식품위생관련 위법행위

2.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(자원)봉사자

- 가. 민원업무지원
- 나. 여성 및 가정문제 상담
- 다. 청소년문제 상담
- 라. 소비자 상담
- 마. 물가모니터
- 바. 자연보호·국토대청결운동
- 사. 교통정리 및 교통질서 캠페인

3. 아르바이트 대학생

4. 체육특기생 지도자

5. 기타 시정에 협조한 정도가 현저한 자

제4조 (기금기준) ①보상금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그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

제5조 (지급절차등) 보상금은 이천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.

제6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